

2-2-2

오색삭도 설치사업 공청회 개최

□ 관련공약

- 공 약 명(2-2-2) :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
- 공약내용 : 삭도시설 3.5km, 중간지주 6개소, 상·하부정류장 설치

□ 소통실적

- 일 시 : 2016. 3. 18(금) 14:00
- 장 소 :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
- 참 석 : 양양군 지역주민 및 관계자
- 주요내용 :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

□ 실적자료



공청회(2016.3.18.)

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계획

-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 후 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자 공청회 개최

□ 사업개요

: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

- 사업기간 : 2015년 ~ 2018년
- 사업주체 : 양양군
- 사업규모 : 교통·운수시설 1개소 신설
 - 삭도연장 : L=3.5km
 - 상하부정류장 및 중간지주 6개

□ 관련규정

: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

- 개최요건(시행령 제40조 제1,2항)

-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
 1.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
 2.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,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
- ②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본 건의 경우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2항에 해당

□ 공청회 개최계획

- 일 시 : 2016. 03. 18(금) 14:00
- 장 소 : 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
- 참석대상 : 지역주민 등
- 설명회 내용
 -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
 - 의견진술자 발표 및 주민의견 수렴

□ 공청회 절차

- (시행령 제40조 제3항)	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함
- 공청회 주재자 선정(시행규칙 제10조 제1항)	·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자가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함
- 의견진술자 추천(시행규칙 제10조 제2, 3항)	·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·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,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함
- 공청회 진행(시행규칙 제11조)	·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함 ·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 질의·답변 및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함
- 공청회 개최 결과 통보(시행령 제40조 제4항)	·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

□ 향후추진계획

통보 : 2016. 3.월 중순

-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제출 : 2016. 3 말

□ 행정사항

- 공청회 장소 확보 : 2016. 2. 24
- 공청회 주재자 선정 : 2016. 2. 25
- 공청회 개최공고 : 2016. 3. 2(홈페이지 및 일간지 등 개최 14일전)
- 공청회 의견진술자 선정 : 2016. 3. 10